화 성 시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시 보

제 209호

2026년 11월 11일 (수)

선 람	기관의 장

차 례

공 고

화성시 공고 제2026-3698호	임시운행기간경과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화성시 공고 제2026-3706호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공고 제2026-3714호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207호	2026년 10월 지방소득세(법인,개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575호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576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조양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577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이정민)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581호	도로지정공고[효행구 봉담읍 덕우리 210-3, 210-2]

회 람									

발행 : 화 성 시 편집 : 언론담당관

화성시 공고 제2026-36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차량 과태료 고지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제4항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감경부과, 본부과, 독촉)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대상: 바**장 등 5건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감경부과, 본부과, 독촉 고지서
○공고기간: 2026. 11. 11.(화). ~ 2026. 11. 25.(화)

■ 상세내역

연번	위반자	주소	위반내용	위반법규 (자동차관리법)	비고 (구분)	공시송달 사유
1	바***장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화성로 ***	임시운행 반납 지연	제27조	임시운행기간경과 과태료 사전감경 고지서	수취인 불명
2	㈜엠*******차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우정읍 호곡길 ***	임시운행 반납 지연	제27조	임시운행기간경과 과태료 독촉 고지서	수취인 불명
3	U**K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농성1길 ***	임시운행 반납 지연	제27조	임시운행기간경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수취인 불명
4	U**K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농성1길 ***	임시운행 반납 지연	제27조	임시운행기간경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수취인 불명
5	U**K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농성1길 ***	임시운행 반납 지연	제27조	임시운행기간경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수취인 불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제출 기한 내 납부 시 과태료가 최대 20% 감경될 수 있으며, 동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과태료 미납 시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납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문의: 화성시 차량등록과(☎031-5189-3303)

2026년 11월 11일

화성시장

화성시 공고 제2026-3706호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2. 제안이유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가치 구현을 위해 청년 및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읍·면·동 예산회의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화성시 주민참여에산제도의 효율성 및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 및 청년 참여 노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

나. 읍·면·동 예산회의 위원의 위촉 대상 문구를 정비하고,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일치시킴

다. 읍·면·동 예산회의의 기능을 지역특화사업 검토에서 주민숙원사업 심의로 변경함

4. 입법예고기간: 2026. 11. 11.(수) ~ 2026. 12. 1.(화) [20일간]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11. 11.(수) ~ 2026. 12. 1.(화) [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 출 처: 화성시 예산재정과 경제환경예산팀

○ 주　소: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예산재정과

○ 연락처: 031)5189-6295 / FAX 031)5189-1622 / 이메일 dkdud2016@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과정의 투명성·민주성을 높이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령, 지역,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등의 지위를 감안하여”를 “연령 및 지역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산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중”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2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민숙원사업 심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읍・면・동 주민참여예산회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의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화성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과정의 투명성·민주성을 높이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령, 지역,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등의 지위를 감안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2.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연령 및 지역을 고려하여 ----------. 1.·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제20조(예산회의 구성 등) ①·②(생 략)	제20조(예산회의 구성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예산회의는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산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
1. ~ 3.(생 략)	1. ~ 3.(현행과 같음)
④(생 략)	④(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 2년 ----------.
⑥ ~ ⑧(생 략)	⑥ ~ ⑧(현행과 같음)
제21조(예산회의 기능) 예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1조(예산회의 기능) ---------- .
1.·2.(생 략)	1.·2.(현행과 같음)
3. 읍·면·동 자체 지역특화사업 검토	3. 주민숙원사업 심의
4.(생 략)	4.(현행과 같음)

화성시 공고 제2026-3714호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최초 무료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주차장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영주차장 확충 등 변화된 주차 여건과 운영환경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표 2 제1호의 표 중 “최초 1시간 30분”을 “최초 1시간”으로 변경

4. **입법예고기간**: 2026. 11. 11.(화) ~ 2026. 12. 1.(화) (20일간)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11. 11.(화) ~ 2026. 12. 1.(화) (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1)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라. 제 출 처

1) 주　소: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3층 주차물류과

2) 연락처: 031-5189-1997

3) 전자우편: lmj1325@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표 중 “최초 1시간 30분”을 “최초 1시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영주차장 이용을 시작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참고

별표 개정사항 대비표

현 행

[별표 2]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제7조제1항 관련)

1. 동부 및 서부 공영주차장

(단위 : 원)

구분	1회 주차(10분기준)			비고
	최초 1시간 30분	무료이후 최초 1시간이내	무료이후 1시간초과	
동부권 환승 상업지구	무료	400	600	야간무료(탄력운영) (23:00~익일10:00)
서부권	무료	300	400	

거주자 우선 주차장	구분	전일제	야간제	주간제
	요금제	30,000/월	15,000/월	
	적용시간	24시간	17:00~다음 날 10:00	10:00~17:00
	비고	3개월 단위		

개 정 안

[별표 2]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제7조제1항 관련)

1. 동부 및 서부 공영주차장

(단위 : 원)

구분	1회 주차(10분기준)			비고
	최초 1시간	무료이후 최초 1시간이내	무료이후 1시간초과	
동부권 환승 상업지구	무료	400	600	야간무료(탄력운영) (23:00~익일10:00)
서부권	무료	300	400	

거주자 우선 주차장	구분	전일제	야간제	주간제
	요금제	30,000/월	15,000/월	
	적용시간	24시간	17:00~다음 날 10:00	10:00~17:00
	비고	3개월 단위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207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김*영 외 236명(기재내역 별첨)
○ 서류의 송달지: 화성시 만세구 우정읍 장안로 등
○ 서류의 명칭: 2026년 6월 ~ 10월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 서류의 내용: 2026년 6월 ~ 10월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237건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부 기한을 2026년 11월 30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우리 구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부과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화성시 만세구청) 및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공고에 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화성시 만세구청 세무1과 지방소득세1팀 (☎031-5189-11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10일

화성시 만세구청장

화성시 효행구 제2026-575호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위반 및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 11. 11. ~ 2026. 11. 25. (14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 11. 11. ~ 2026. 11. 25. (14일간)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1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효행구 경제환경과(☎ 031-5189-7740,7741)

화 성 시 효 행 구 청 장 화성시 효행구 청장인

사전통보 공시송달 내역 - 전기차충전구역 주차위반 및 충전방해 사전통보 공시송달

일련번호	고지구분	위반일시	차량번호	발행일	반송일	반송사유	성명	주소	등기번호
1	사전통보	2026-10-17 16:58	01소36**	2026-10-27	2026-11-03	폐문부재(우편수취함)	정*직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	1026927542668
2	사전통보	2026-09-21 22:55	02루61**	2026-10-21	2026-10-28	폐문부재(우편수취함)	이*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조례못등	1026927542495
3	사전통보	2026-09-28 23:58	40무47**	2026-10-21	2026-10-27	폐문부재(우편수취함)	김*형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	1026927542496
4	사전통보	2026-10-19 02:32	45저34**	2026-10-27	2026-11-03	폐문부재(우편수취함)	남*정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서북안길	1026927542671
5	사전통보	2026-10-24 12:34	53서47**	2026-10-27	2026-11-03	폐문부재(우편수취함)	강*정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기배로	1026927542673
6	사전통보	2026-10-14 22:17	68루67**	2026-10-21	2026-10-28	폐문부재(우편수취함)	이*필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삼봉안길	1026927542497
7	사전통보	2026-10-16 22:49	96로76**	2026-10-27	2026-11-03	폐문부재(우편수취함)	이*필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삼봉안길	1026927542675
8	사전통보	2026-10-21 13:04	137조28**	2026-10-27	2026-11-03	폐문부재(우편수취함)	최*호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새비봉서로	1026927542652
9	사전통보	2026-10-05 20:39	13누15**	2026-10-21	2026-10-28	폐문부재(우편수취함)	박*우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효행로	1026927542499
10	사전통보	2026-10-24 21:54	256오29**	2026-10-27	2026-11-03	폐문부재(우편수취함)	지*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026927542665
11	사전통보	2026-10-22 18:34	29더63**	2026-10-27	2026-11-03	폐문부재(우편수취함)	유*식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천문	1026927542653
12	사전통보	2026-10-15 20:12	62수23**	2026-10-27	2026-11-03	폐문부재(우편수취함)	김*기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새터길	1026927542666
13	사전통보	2026-10-09 12:05	01머62**	2026-10-21	2026-10-28	폐문부재(우편수취함)	박*철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	1026927542501
14	사전통보	2026-10-13 08:00	05두29**	2026-10-21	2026-10-28	폐문부재(우편수취함)	박*구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	1026927542502
15	사전통보	2026-10-06 02:30	102가73**	2026-10-21	2026-10-28	폐문부재(우편수취함)	임*묵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와우로	1026927542504
16	사전통보	2026-10-03 08:48	109다90**	2026-10-21	2026-10-27	폐문부재(우편수취함)	서*옥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	1026927542507
17	사전통보	2026-04-19 04:02	132어15**	2026-10-21	2026-10-28	폐문부재(우편수취함)	강*필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	1026927542510
18	사전통보	2026-04-01 04:36	132어15**	2026-10-21	2026-10-28	폐문부재(우편수취함)	강*필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	1026927542509
19	사전통보	2026-10-14 08:33	13더99**	2026-10-21	2026-10-27	폐문부재(우편수취함)	이*세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1026927542512
20	사전통보	2026-10-02 05:18	154하99**	2026-10-21	2026-10-26	폐문부재(우편수취함)	(*)*봉*트*	경기도 군포시 삼성로8번길	1026927542514
21	사전통보	2026-10-07 15:47	167오48**	2026-10-21	2026-10-27	폐문부재(우편수취함)	김*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1026927542515
22	사전통보	2026-10-13 19:46	184너62**	2026-10-21	2026-10-27	폐문부재(우편수취함)	김*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	1026927542517
23	사전통보	2026-10-09 01:22	190라88**	2026-10-21	2026-10-28	폐문부재(우편수취함)	이*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	1026927542518
24	사전통보	2026-10-21 12:42	223마98**	2026-10-27	2026-11-03	폐문부재(우편수취함)	김*현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서북안길	1026927542656
25	사전통보	2026-10-17 08:03	315두13**	2026-10-27	2026-11-03	폐문부재(우편수취함)	김*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1026927542660
26	사전통보	2026-10-07 07:30	32모98**	2026-10-21	2026-10-27	폐문부재(우편수취함)	김*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1026927542524
27	사전통보	2026-09-16 04:51	34모06**	2026-10-21	2026-10-28	폐문부재(우편수취함)	이*희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새터길	1026927542525
28	사전통보	2026-10-14 15:11	366너43**	2026-10-21	2026-10-27	폐문부재(우편수취함)	황*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026927542491
29	사전통보	2026-10-03 03:35	3**로51**	2026-10-21	2026-10-28	폐문부재(우편수취함)	이*민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	1026927542526
30	사전통보	2026-10-06 02:28	384보76**	2026-10-21	2026-10-28	폐문부재(우편수취함)	(*)*도*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8길	1026927542527
31	사전통보	2026-10-18 12:03	48부32**	2026-10-27	2026-11-03	폐문부재(우편수취함)	홍*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026927542663
32	사전통보	2026-10-13 15:29	48부32**	2026-10-21	2026-10-27	폐문부재(우편수취함)	홍*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026927542530
33	사전통보	2026-10-07 09:41	55고24**	2026-10-21	2026-10-28	폐문부재(우편수취함)	유*재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와우로	1026927542532
34	사전통보	2026-10-03 08:50	56부64**	2026-10-21	2026-10-28	폐문부재(우편수취함)	김*중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송내안골길	1026927542533
35	사전통보	2026-10-07 19:55	86서76**	2026-10-21	2026-10-27	폐문부재(우편수취함)	서*식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일로	1026927542535
36	사전통보	2026-10-18 09:08	14누15**	2026-10-21	2026-10-28	폐문부재(우편수취함)	백*훈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새비봉서로	1026927542493
37	사전통보	2026-10-09 13:26	26더67**	2026-10-21	2026-10-28	폐문부재(우편수취함)	이*석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새비봉서로	1026927542494
38	사전통보	2026-09-23 01:40	29하85**	2026-10-21	2026-10-27	폐문부재(우편수취함)	주*회* *카*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	1026927542537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5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화성시 효행구청장

1.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2.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3. 공시송달 대상자 : 조 ○ 호
4. 불법행위 현황

시 정 의 무 자		위 반 행 위 내 역					
성 명	주 소	행위지	행 위	용 도	구 조	면 적 (㎡)	시정요구기한
조○호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3길 135, 1**동 ***7호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양노리 산44-5	신 축	판매시설	철파이프조	40	2026.11.25.

5. 공고기간 : 2026.11.11. ~ 2026.11.25. (14일간)
6.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기타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효행구 도시건축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화성시 효행구 도시건축과	담당자 직/성명	주무관 양성범	전화번호	031-5189-7717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5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화성시 효행구청장

1.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2.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3. 공시송달 대상자 : 이 ○ 민
4. 불법행위 현황

시 정 의 무 자		위 반 행 위 내 역					
성 명	주 소	행위지	행 위	용 도	구 조	면 적 (㎡)	시정요구기한
이○민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샘마을길 24, 1**호 5**호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내리 751-4	신 축	관리사(농막)	기 타	18	2026.11.25

5. 공고기간 : 2026.11.11. ~ 2026.11.25. (14일간)
6.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기타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효행구 도시건축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화성시 효행구 도시건축과	담당자 직/성명	주무관 양성범	전화번호	031-5189-7717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 - 581호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6. 11. 11.

화성시 효행구청장

1. 도로위치 :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덕우리 210-2, 210-3
2. 도로길이 : 30.5m, 7m
3. 도로너비 : 5m, 5m
4. 도로면적 : 188㎡, 35㎡
5. 지정동기 :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덕우리 210-3 건축신고
6.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7. 편입토지

(단위 : ㎡)

위 치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제외면적	소유자	비 고
봉담읍 덕우리	210-2	대	724	188	536	곽**	
봉담읍 덕우리	210-3	답	1,715	35	1,680	곽**	

8. 공고기간 : 영구
9. 공고방법 :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10. 기타사항

위 도로지정 공고 관련서류는 화성시 효행구청 도시건축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서	효행구청 도시건축과	담당자 직/성명	건축관리팀 조현주	전화번호	031-5189-7700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 척 <임 의>



현황도	축 척 [] 1 / 600, [] 1 / 1,200